

1월 31일부터 법인登記 절차 대폭 간소화

- 법인이 지점 설치·임원 변경 시 본점 소재지에서만登記해도 인정
- 본점 이전 시에도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登記하면 완료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登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登記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登記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登記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지사에 각각登記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登記를 하면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금)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登記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登記법」이 분사무소·지점登記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登記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사무소·지점 설치登記 간소화>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조합·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주사무소·본점 및 분사무소·지점 소재지에서 각각登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본점의 소재지에서만登記하면 된다.

<주사무소·본점 이전등기 간소화>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예전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변경등기 간소화>

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주사무소·본점 및 분사무소·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변경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 법인 등기 절차 간소화 법령 개정 전-후 비교표 >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법인 분사무소·지점 설치 시	주사무소·본점 및 분사무소·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
법인 주사무소·본점 이전 시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등기
법인 등기사항 변경 시	주사무소·본점 및 분사무소·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변경 사항 등기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인의 등기 신청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즉시 제·개정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정비 대상 법령 목록

담당 부서	법령정비과	책임자	과 장	이진희	(044-200-6571)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0-657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연번	정비대상 법령	소관 부처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8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11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1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국가보훈부
17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국방부
18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령	
19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2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3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24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26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2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9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3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3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3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35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36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3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39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40	한국은행법 시행령	
41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42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4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4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4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46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48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4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50	방송법 시행령	
5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52	변호사법 시행령	법무부
53	상법 시행령	
54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5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56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청
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5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59	무역보험법 시행령	
6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61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6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63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64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6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66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67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6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7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7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7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7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76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77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환경부
78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